

개정 정관

**Sustainable Korean Culture Institute, Inc.**

지속가능한 한국문화 연구소

캘리포니아 비영리 공익 법인

이 해선





목차

<b>1조</b>	<b>이름</b> .....	<b>1</b>
1.1절	법인명.....	1
<b>2조</b>	<b>사무실</b> .....	<b>1</b>
2.1절	본부.....	1
2.2절	그 외 사무실.....	1
<b>3조</b>	<b>목적</b> .....	<b>1</b>
3.1절	일반 목적.....	1
3.2절	구체적 목적.....	1
<b>4조</b>	<b>제한</b> .....	<b>2</b>
4.1절	정치 활동.....	2
4.2절	금지 활동.....	2
<b>5조</b>	<b>자산 기부</b> .....	<b>2</b>
5.1절	비영리 목적의 기부 재산.....	2
5.2절	해산시 자산의 배분.....	2
<b>6조</b>	<b>회원자격</b> .....	<b>3</b>
6.1절	회원.....	3
6.2절	무의결권 회원.....	3
<b>7조</b>	<b>이사</b> .....	<b>3</b>
7.1절	인원수 및 자격.....	3
7.1.1	인원수.....	3
7.1.2	자격.....	3
7.1.3	직권상 이사.....	4
7.2절	이사회가 행사하는 법인 권능.....	4
7.3절	임기; 승계자 선출.....	4
7.4절	공석.....	4
7.4.1	공석을 유발하는 경우.....	4
7.4.2	해임.....	5
7.4.3	이사 정원의 축소로 인한 해임 불가.....	5
7.4.4	사퇴.....	5
7.4.5	공석 충원을 위한 선거.....	5
7.5절	정기 회의.....	5
7.6절	특별 회의.....	5
7.7절	회의 고지.....	6
7.7.1	고지 방법.....	6
7.7.2	시간 요구사항.....	6
7.7.3	고지 내용.....	6

목차

7.8절	이사회 회의 장소.....	6
7.8.1	전화 또는 유사 통신 장비를 활용한 회의.....	6
7.9절	이사회 정족수 및 조치.....	7
7.9.1	정족수.....	7
7.9.2	유효한 이사회 조치를 위한 최소 투표 요구사항.....	7
7.9.3	유효한 이사회 조치를 위해 더 많은 투표가 필요한 경우.....	7
7.10절	고지 포기.....	7
7.11절	휴회.....	8
7.12절	휴회 고지.....	8
7.13절	회의 진행.....	8
7.14절	회의를 거치지 않은 조치.....	8
7.15절	이사의 수수료와 보수.....	8
7.16절	이사의 면책.....	9
<b>8조</b>	<b>위원회.....</b>	<b>9</b>
8.1절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	9
8.2절	이사 위원회의 회의와 조치.....	9
8.3절	이사 위원회의 정족수 규칙.....	9
8.4절	권한 위임 철회.....	10
8.5절	비영리 무결점 행위/감사 위원회.....	10
8.6절	자문위원회.....	10
<b>9조</b>	<b>담당관.....</b>	<b>10</b>
9.1절	담당관.....	10
9.2절	담당관 선출.....	11
9.3절	담당관 해임.....	11
9.4절	담당관 사퇴.....	11
9.5절	직위 공석.....	11
9.6절	담당관 책임.....	11
9.6.1	이사회 의장.....	11
9.6.2	집행 이사.....	11
9.6.3	서기관.....	12
9.6.4	재무 담당자.....	12
9.6.5	추가 담당관.....	13
9.7절	집행 이사.....	13
9.8절	담당관 보수.....	13
9.8.1	이사회가 확정된 봉급.....	13
9.8.2	보수의 공정성.....	13
<b>10조</b>	<b>이해의 충돌과 보수 승인 정책.....</b>	<b>14</b>



목차

10.1절	이해 충돌 정책의 목적.....	14
10.2절	정의.....	14
10.2.1	이해관계인.....	14
10.2.2	금전적 이해.....	14
10.3절	이해 충돌 회피 절차.....	14
10.3.1	고지의무.....	14
10.3.2	이해 충돌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결정.....	15
10.3.3	이해 충돌을 다루기 위한 절차.....	15
10.3.4	이해 충돌 정책의 위반.....	15
10.4절	이사회와 위원회 절차의 기록.....	15
10.5절	이사 겸직.....	16
10.6절	보수 승인 정책.....	16
10.7절	연차 보고서.....	18
10.8절	주기적 검토.....	18
10.9절	외부 전문가 이용.....	18
<b>11조</b>	<b>이사, 임원, 직원 및 대리인의 보상.....</b>	<b>19</b>
11.1절	정의.....	19
11.1.1	“대리인”은.....	19
11.1.2	“소송 절차”는.....	19
11.1.3	“비용”에는.....	19
11.2절	보상 조항의 적용.....	19
11.2.1	대리인의 성공적 변론.....	19
11.2.2	대리인에 의한 조정 또는 성공적이지 못한 변론.....	19
11.3절	연구소 이외의 사람에 의해 제기된 소송.....	19
11.3.1	제3자 소송 절차에서 보상 범위.....	19
11.3.2	제3자 소송 절차에서 보상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 규범.....	20
11.4절	연구소에 의한 또는 연구소를 대신해 제기된 소송.....	20
11.4.1	연구소에 의한 또는 연구소를 대신한 소송 절차에서 보상 범위.....	20
11.4.2	연구소에 의한 또는 연구소를 대신한 소송 절차에서 보상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 규범.....	20
11.4.3	법정 밖에서 조정된 청구.....	20
11.4.4	대리인에 대해 재정된 청구 및 소송.....	21
11.5절	대리인의 선의의 행동에 대한 판단.....	21
11.6절	제한.....	21
11.7절	비용의 선급.....	21
11.8절	비이사 및 비임원의 계약상 권리.....	22
11.9절	보험.....	22
<b>12조</b>	<b>법인 기록, 보고서 및 직인.....</b>	<b>22</b>
12.1절	의사록.....	22

목차

12.2절	회계 장부 및 회계 기록.....	22
12.3절	법인 정관 및 부칙.....	22
12.4절	연방세 면제 신청서 및 연간 정보 보고서의 유지와 검사.....	22
12.5절	연간 보고서, 거래내역서.....	22
12.6절	이사의 검사권.....	23
12.7절	법인 직인.....	23
12.8절	기부금의 연간 보고서 및 웹사이트 공개.....	23
13조	법률 문서, 예금 및 기금의 집행.....	23
13.1절	법률 문서의 집행.....	23
13.2절	수표 및 어음.....	24
13.3절	예금.....	24
13.4절	선물.....	24
14조	해석 및 정의.....	24
15조	개정.....	24
15.1절	이사에 의한 개정.....	24
	개정 정관 채택 확인서.....	25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연차회의” - 7.5절
- “정관” - 7.2절
- “법무장관” - 7.4.4절
- “이사회” - 7.2절
-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 - 3.1절
- “의장” - 9.6.1절
- “법령” - 4.2절
- “위원회” - 8.1절
- “법인” - 1.1절
- “이사” - 7.1.1절
- “이메일” - 7.7.1절
- “담당관” - 9.1절
- “집행이사” - 9.6.2절
- “서기관” - 9.6.3절
- “재무 담당자” - 9.6.4절



上海圖書館藏

**1조 이름**

**1.1절 법인명**

이 법인의 명칭은 **Sustainable Korean Culture Institute (지속가능한 한국문화 연구소)** 법인("연구소" 또는 "SKCI")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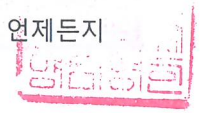
**2조 사무실**

**2.1절 본부**

연구소의 업무를 위한 본부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내 어느 곳이나 설립할 수 있다.

**2.2절 그 외 사무실**

이사회는 연구소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느 곳이나 지사나 부속 사무소를 언제든지 설립할 수 있다



**3조 목적**

**3.1절 일반 목적**

연구소는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공공 법인으로서 공공 및 자선을 목적으로 하여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 법률(이하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그 목적은 지속 가능한 문화에 기초한 지역 커뮤니티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문화를 복원하고 연구하며 홍보하는데 있다. 지속가능한 문화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재생 가능한 주거지에 기초하며, 전 연령이 건강한 삶과 웰빙을 누리고, 모두에게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생산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며, 누구에게나 정의로운,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기반으로 한다(2015년 9월 25일에 UN 총회에서 채택한 "우리 세상의 변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어젠더"를 근거로 함).

**3.2절 구체적 목적**

연구소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한국의 지속 가능한 모든 문화 측면에 관한 디지털 보존, 과학적 연구 또는 번역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그에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 문화에 대한 지식을 증진한다.
- (b) 과학적 정보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워크샵, 세미나, 컨퍼런스, 문화 관광 프로그램을 비롯한 한국의 지속가능 문화 관련한 지식의 전시나 그 외 형태의 지식 보급을 촉진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서적, DVD, 팸플릿, 뉴스레터 등의 문서를 준비, 발행, 판매, 유통한다.
- (c) 전통적 한국 건축물(한옥)을 모델로 한 연구소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재생 가능한 주거지)에 대한 공공 인식을 증진한다.



- (d) 출신 지역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특별히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학위 후보자 또는 포닥) 등에게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수여함으로써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한다.
- (e) 자폐증이나 발달장애 환자 등을 비롯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근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생산적인 양질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한다.
- (f) 연구소 건물 내에 미술관을 운영함으로써 현지 한국 커뮤니티 내에서 지속되어 온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증진시킨다.
- (g) 지역이나 국내, 혹은 국제적인 것이든, 모든 종류의 조직, 법인, 기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기부와 유산을 수령하여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촉진한다.

**4조 제한**



**4.1절 정치 활동**

연구소는 3조에 명시된 공공 및 자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 법인은 선전을 수행하거나 그 외 입법에 영향 미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없고, 또한 공직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 캠페인(성명서 발행이나 배포 포함)에 참여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

**4.2절 금지 활동**

연구소는 사소한 정도를 제외하고 3조에 명시된 목적 촉진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연구소는 담당관, 이사 또는 기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담당관, 이사 또는 기타 개인에게 이익, 수익 또는 배당금을 분배할 수 없다. 또한 3조의 어떤 조항도 (i) 1986년 내국세법령 개정본("법령")의 501(c)(3)절에 의거하여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 또는 (ii) 법령의 170(c)(2)절에 의거하여 기부금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법인이 수행하도록 허가되지 않은 활동에 연구소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5조 자산 기부**

**5.1절 비영리 목적의 기부 재산**

이 법인의 재산은 공공 및 자선 목적에 불가역적으로 기부된 것이다. 이 법인의 순수입이나 자산 중 어떤 부분도 이어나 담당관의 이익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없다. 단, 연구소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대가로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3조에 명시된 목적 달성 과정에서 지급 및 분배할 수 있도록 인가와 권한을 얻는 경우는 예외이다.

**5.2절 해산시 자산의 배분**

이 법인의 해산이나 청산시, 모든 부채와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러한 변제를 위해 예비된 것을 빼고 남은 잔여자산은 자선 목적으로만 설립되어 운영되며, 법령의 501(c)(3)절에

의거하여 면세 지위를 획득한 비영리 펀드, 재단 또는 법인에게 배분해야 한다.

## 6조 회원자격

### 6.1절 회원

연구소는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 5056절의 취지 내에서 회원을 보유하지 않는다.

### 6.2절 무의결권 회원

무의결권 회원은 부회원, 명예 회원 및 연구소 회원이라고 분류한다. 그러한 회원은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 5056절에 규정된 것처럼 연구소의 "회원"이 아니다.

#### (a) 부회원

연구소 설립 목적에 관심을 보인 자. 비영리 정책은 부회원 선출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 (b) 명예회원

이사회가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때때로) 연구소에 기여하고 공헌하여 그러한 지명에 합당한 자에게 명예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명예회원은 수수료, 회비 또는 평가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 (c) 연구소회원

연구소 설립 목적에 관심을 보이고 공헌한 아무 종류의 법인체, 조직 또는 단체(예: 대학교, 연구센터, 도서관, 학술단체). 비영리 정책은 제도회원 선출 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d) 각 회원가입 신청은 이사회가 승인하여 연구소가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범주의 회원자격은 집행 이사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수수료를 수령한 이후 부여 받는다. 무의결권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의결권 없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 7조 이사

### 7.1절 인원수 및 자격

#### 7.1.1 인원수

연구소의 승인된 이사 수("이사")는 3인 ~ 15인 이어야 한다. 승인되는 정확한 인원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 한도 내에서 확정한다.

#### 7.1.2 자격

이사의 금지 활동:

(a) 연구소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상반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b)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외부의 제3자에게 연구소와 그 정책을 잘못 대변하는 것

- (c) 해당 이사의 임기 시작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채택된 이사회 업무에 관한 기타 자격이나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것. 단 그 이사는 자신의 임기 시작 시 그러한 자격이나 요구사항을 고지 받아야 한다.

### 7.1.3 직권상 이사

승인된 하나의 이사 직위는 고용 상태와 보수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집행 이사가 직권으로 총원해야 한다. 나머지 이사는 7.3절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

### 7.2절 이사회가 행사하는 법인 권능

- (a) 법인 정관("정관"),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 및 기타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소의 업무를 관리하고 모든 법인 권능은 이사회("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이사회는 연구소의 활동 관리를 어떤 개인(들), 관리 회사 또는 위원회(그 구성이 어떠한 상관없음)에게 위임해도 된다. 단, 이사회의 최종 지시에 따라 연구소의 활동과 업무를 관리하고 모든 법인 권능을 행사해야 한다.

- (b) 위의 (a) 하위절에 명시된 일반 권능을 침해하지 않고 동일한 제한에 적용 받으면서, 이사는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1) 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를 설정하고 변경한다.
- (2) 재산: 실물, 개인, 지적 재산을 확보하고, 구성하며, 소유한다.
- (3) 계약: 연구소 설립 목적을 진행하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 실체와 계약과 합의를 체결한다.
- (4) 개시 비용: 연구소의 법인설립뿐만 아니라 연방세와 주세 면세 지위 확보를 위한 변호사와 회계사의 수수료와 비용 및 제출 수수료를 포함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고, 자금을 제공한 자에게 이 조직을 위한 개시 비용의 재납부를 승인한다.

### 7.3절 임기; 승계자 선출

이사는 3년 임기로 이사회의 각 연차 회의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공석을 총원하기 위해 선출된 이사를 비롯하여 각 이사는 선출된 임기 만료 및 승계자 선출과 임명 때까지 혹은 내규와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에 따른 해당 이사의 조기 사퇴나 해임 때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임기를 조정해도 된다.

### 7.4절 공석

#### 7.4.1 공석을 유발하는 경우

이사회 공석은 다음의 경우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i) 이사의 사망, 사퇴 또는 해임; (ii) 승인된 이사 수가 증원될 때면 항상; 혹은 (iii) 이사(들)를 선출해야 하는 회의에서 이사회가 승인된 최대 수의 이사를 선출하지 못할 때

7.4.2 해임

이사회는 법원 명령에 의한 부적합한 의도나 중범죄 판결을 받았거나, 법원의 최종 명령이나 판결을 통해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이사의 직위를 (결의를 통해) 공석으로 선언해도 된다.

이사회는 해당 이사의 현재 임기 시작 시점에 유효했던 필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이사의 직위를 (7.1.2절에 명시된 이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격을 충족하는 이사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공석으로 선언해도 된다.

현역 이사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이사를 아무런 사유 없이 해임해도 된다.

7.4.3 이사 정원의 축소로 인한 해임 불가

승인된 이사 수 축소로 인해, 해당 이사의 직위가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다. 단, 예외적으로 내규와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에 따라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는 있다.

7.4.4 사퇴

이 7.4.4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의장, 서기관 또는 이사회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사퇴할 수 있다. 그러한 사퇴서는 (i) 사퇴서 전달일 또는 (ii) 고지서에 명시된 사퇴 발효 시점 중 더 늦은 날짜에 효력을 가진다. 이사는 자신의 업무를 담당할 이사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으면 사퇴할 수 없다. 단, 캘리포니아 법무장관("법무장관")에게 고지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7.4.5 공석 충원을 위한 선거

이사 해임으로 인한 공석을 비롯하여 이사회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는 최대한 빨리 추가 이사를 선출하여 그 공석을 충원해도 된다. 현역 이사 수가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i) 현역 이사의 만장일치 서면 동의, (ii)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 5211절에 부합하는 포기 또는 고지에 따라 개최되는 회의에서 현역 이사의 확정적인 과반수 투표 (iii) 단독으로 남은 이사를 통해 추가 이사를 선출하여 그러한 공석을 충원해도 된다.

7.5절 정기 회의

매년 이사회는 이사 선출, 담당관 임명, 법인 예산 검토와 승인, 기타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때때로 내규에서 "연차 회의"라고 한다. 이사회는 때때로 결의를 통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그 외 정기 회의를 개최해도 된다.

7.6절 특별 회의

어떤 목적이든 상관없이 의장, 집행 이사, 서기관 또는 2인의 이사는 언제라도 이사회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7.7절 회의 고지

7.7.1 고지 방법

(7.5절에서 허용하듯이) 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사전에 정기 회의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기 및 특별 회의의 시간과 장소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하여 각 이사에 고지해야 한다.

- (a) 구두 또는 서면 고지의 직접 전달
- (b) 제1종 우편 (우편요금 지급필)
- (c) 음성 메시지 전달 시스템 또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전달하도록 설계된 기타 시스템이나 기술을 비롯한 전화
- (d) 팩스, 전자 메일("이메일") 또는 수신인이 동의한 기타 전자 송신 수단

그러한 모든 고지는 연구소의 기록물에 명시된 이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어드레스로 전달하거나 발송해야 한다. 직접 또는 전화상으로 전달하는 구두 고지는 이사에 직접 전달하거나, 그러한 고지를 이사에 즉각 전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전달해도 된다. 정기 회의 고지는 1회 이상 정기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를 명시한 달력이나 스케줄의 형태로 전달해도 된다.

7.7.2 시간 요구사항

제1종 우편으로 발송하는 고지는 회의 설정 시간보다 4일 이상 전에 미국 우편함에 넣어야 한다. 직접 전달, 전화, 음성 메시지 전달 시스템이나 메시지를 기록하고 전달하도록 설계된 기타 시스템이나 기술, 팩스,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 송신을 통해 전달하는 고지는 회의 설정 시간보다 48시간 이상 전에 전달해야 한다.

7.7.3 고지 내용

고지 시에는 회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연구소 본점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경우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지는 유효하다. 고지 시에는 내규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목적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7.8절 이사회 회의 장소

이사회 정기 및 특별 회의는 회의 고지에 지정되어 있거나 혹은 (고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고지가 없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지정한 주 내 또는 밖의 아무 장소에서 개최해도 된다. 정기 또는 특별 회의의 장소가 고지에 지정되거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회의는 연구소 본점에서 개최해야 한다.

7.8.1 전화 또는 유사 통신 장비를 활용한 회의

컨퍼런스 전화 또는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에서 허용하는 기타 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회의를 개최해도 된다. 단,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이사가 서로 통신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의 그 외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한 모든 이사는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7.9절 이사회 정족수 및 조치

7.9.1 정족수

현역 이사 과반수 [단, 7.1.1절에 나와 있는 승인된 수의 1/5 또는 2인 이상(둘 중 더 많은 인원수)의 이사여야 함]는 7.11절에 나와 있는 휴회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7.9.2 유효한 이사회 조치를 위한 최소 투표 요구사항

정족수가 참석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는 이사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 또는 의결되는 모든 결정은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 정관 혹은 내규에서 더 많은 인원수를 명백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사회의 조치가 된다. 처음에 정족수가 참석한 회의는 취해지는 조치가 그 회의에 필요한 정족수 과반수 이상으로 승인되는 경우 이사회 회의에 기권할지라도 사무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

7.9.3 유효한 이사회 조치를 위해 더 많은 투표가 필요한 경우

다음 조치가 효력을 얻으려면, 모든 현역 이사의 과반수 투표가 필요하다.

- (a) 어떤 이사가 10.1절에 명시된 직·간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약이나 거래의 승인 (단,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의 투표는 산입하지 않음)
- (b) 8.1절에 명시된 위원회(자문위원회 아님)의 창설 및 그 위원회에 임명
- (c) 7.4.2절에 명시된 대로 아무 사유 없이 이사 해임
- (d) 11절에 명시된 이사의 보수

7.10절 고지 포기

소집과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어디에서 개최되든 상관없이, 이사회의 회의 진행은 (i) 정족수가 참석하고 (ii) 회의 전 또는 후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각 이사가 서면 고지 포기, 회의 개최 동의 또는 회의록 승인에 서명하는 경우 정기 소집과 고지 이후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서 취해지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고지 포기나 동의는 회의 목적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포기, 동의, 승인은 법인 기록과 함께 제출하거나 회의록의 일부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적합한 고지 결여에 관해 회의 개시 시점이나 그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는 이사에게는 회의 고지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 이사는 서기관에게 서면 이의를 직접 제출하거나, 이의 제기일 현재 연구소의 기록물에 나와 있는 연구소 본점의 서기관 앞으로 제1종 우편을 발송하거나, 이의 제기일 현재 연구소의 기록물에 나와 있는 연구소의 팩스번호로 팩스 발송하여서만 고지 결여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11절 휴회

정족수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참석하는 이사 과반수는 어떤 회의라도 휴회하여 시간과 장소를 새로 설정할 수 있다.

7.12절 휴회 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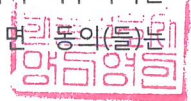
회의를 24시간 이상 휴회하지 않는다면, 휴회된 회의를 재개하는 시간과 장소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휴회 시점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에게 휴회된 회의 재개 전에 시간과 장소를 직접 고지해야 한다.

7.13절 회의 진행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주관하고, 의장이 없거나 부재 시에는 집행 이사가 주관하며, 집행 이사와 의장이 모두 부재 시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이사 과반수로 선정된 임시 회의 의장이 주관한다. 서기관은 모든 이사회 회의의 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단, 서기관 부재 시에는 의장직을 수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임명하여 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회의는 이사회가 때때로 정할 수 있는 절차 규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단, 그러한 규칙은 내규, 정관 또는 연구소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 규정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

7.14절 회의를 거치지 않은 조치

이사회가 취해야 하거나 취하도록 허용되는 조치는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그 조치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회의를 거치지 않고 수행해도 된다. 이 7.14절에 한해서만, "이사회의 모든 구성원"에는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 5233절에 규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를 포함할 수 없다. 그러한 서면 동의는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투표와 동일한 강제력과 효력을 가진다. 그러한 서면 동의를 이사회의 회의록과 함께 편철 보관해야 한다.



서면 동의는 제1종 우편, 메신저, 택배, 팩스, 이메일 또는 의장이나 집행 이사가 만족할만한 그 외 합당한 방법을 통해 전달해도 된다.

7.15절 이사의 수수료와 보수

연구소는 이사로서 연구소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대가로 이사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이사는 연구소에 대한 자신의 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에 대해 이사회가 승인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배상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는 이사직 이외의 능력으로 연구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그러한 보상이 합리적이고 "이해관계자"가 현역 이사 49%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라 함은 이 7.15절에 한해 다음의 사람을 의미한다.

- (a)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담당관이나 기타 직원, 독립 계약자 등 누구든 간에, 연구소가 과거 12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현재 보상하고 있는 자 (이사로서 이사에게 지급되는 합당한 보상은 제외)

(b) 그러한 자의 형제, 자매, 조상, 후손, 배우자, 매부, 사위, 며느리, 장모, 장인 등

7.16절 이사의 면책

이사는 연구소의 부채, 채무 또는 기타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8조 위원회

8.1절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

이사회는 현역 이사 과반수가 채택하는 결의를 통해 이사회의 재량으로 운영할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하나 이상의 이사 위원회("위원회")를 창설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됨). 이사회의 결의가 있다면, 이사회의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해도 된다. 단, 예외적으로 다음 사항은 위원회가 수행할 수 없다.

- (a)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에 따라 구성원의 승인이나 모든 구성원 중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치를 승인하는 것
- (b)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 내 공석을 충원하는 것
- (c) 이사회나 위원회에 재직하는 것에 대해 이사의 보수를 확정하는 것
- (d) 내규를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신규로 채택하는 것
- (e) 명시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없는 이사회의 결의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
- (f) 다른 위원회 또는 이 위원회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것
- (g) 여러 입후보자를 지명한 후 1명의 이사 피지명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지출하는 것
- (h) (i) 연구소와 1명 이상의 이사간 혹은 (ii) 연구소와 1명 이상의 이사가 실질적인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실체간 거래를 승인하는 것



8.2절 이사 위원회의 회의와 조치

위원회의 회의와 조치는 이사 회의에 관한 7조의 규정(이사회와 그 구성원 대신 위원회와 그 구성원을 사용함에 따라 7조의 내용을 그에 맞게 변경함)에 따라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정기 회의 일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위원회의 특별 회의도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법인 기록물과 함께 편철 보관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때때로 이사회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는 내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위원회 지배구조에 관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이사회가 채택한 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러한 규칙을 채택해도 된다.

8.3절 이사 위원회의 정족수 규칙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는 휴회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사업 추진을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참석하는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는 어떤



회의라도 휴회하여 시간과 장소를 새로 정할 수 있다. 정족수가 참석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통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와 의결되는 모든 결정은 위원회의 조치로 간주하고, 전체 이사회 의 과반수 투표를 요하는 조치와 관련한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처음에 정족수가 참석한 회의는 취해지는 조치가 그 회의에 필요한 정족수 과반수 이상으로 승인되는 경우 위원회 구성원이 기권할지라도 사무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

#### 8.4절 권한 위임 철회

이사회는 언제든지 위원회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원 수를 늘리거나 줄이며(단, 2인 이상이어야 함), 위원회 내 공석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 8.5절 비영리 무결점 행위/감사 위원회

연구소의 총 수입이 2백만 달러 이상(수령한 자금을 대한 회계가 필요한 정부기관의 보조금과 정부기관과의 서비스 계약금 제외)인 회계연도에, 이사회는 (i)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회계 원칙으로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감사 표준에 따라 독립 공인회계사("CPA")의 감사를 받고; (ii) 국세청 양식 990과 유사한 감사 자료를 법무장관과 공공에게 공개하며; (iii) 감사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직원, 집행 이사 또는 재무 담당자를 비롯한 연구소의 유급 또는 무급 임직원은 감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재무위원회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50% 이상이 재무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무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면서, 감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 (a) CPA 고용 및 해고에 관해 이사회에게 권고한다.
- (b) CPA와 협의하여 연구소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다.
- (c) CPA가 실시하는 감사 이외의 서비스를 승인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미국 감사원장이 발행하는 황서(Yellow Book)의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 (d)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를 대신하여 CPA의 보수를 협상한다.

#### 8.6절 자문위원회

이사회는 재량으로 하나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창설할 수 있다. 그러한 자문위원회에 이사를 임명해도 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이사회는 자문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모든 조치와 권고는 이사회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을 지닐 수 있다.

### 9조 담당관

#### 9.1절 담당관

집행 이사, 의장, 비서관 및 재무 담당자는 연구소의 담당관("담당관")이다. 이러한 자들(의장

제외)은 이사 중에서 선출해도 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이사회는 9.6.5절에 따라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비롯하여 이사회가 확정할 수 있는 책무, 권한, 권리, 특전을 가진 담당관(반드시 이사일 필요는 없음)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동일인이 여러 직위를 겸직해도 된다. 단, 예외적으로 서기관과 재무 담당자는 집행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수 없다.

9.2절 담당관 선출

담당관(9.6.5절에 따라 임명되는 자는 제외)은 2년의 임기로 연구소의 연차 회의에서 이사회가 선출하고, 각자는 자신을 대신할 승계자가 선출될 때까지 혹은 조기 사퇴나 해임 시까지 이사회의 재량으로 직위를 유지한다.

9.3절 담당관 해임

고용 계약에 의거하여, 담당관은 사유가 있든 아니면 없든 상관 없이 (i) 이사회의 정기 회의나 특별회의 시 또는 연구소의 연차 회의 시 이사회가 해임하거나 (ii) 이사회에게서 해임 권한을 부여 받은 다른 담당관이 해임할 수 있다.

9.4절 담당관 사퇴

담당관은 연구소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다. 사퇴는 그러한 고지서 수령일 또는 그 고지서에 적힌 이후 시점에 효력을 가진다. 고지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퇴 수락이 없더라도 효력을 가진다. 담당관이 당사자인 계약에 따른 연구소의 권리는 사퇴로 인해 영향 받지 않는다.

9.5절 직위 공석

사망, 사퇴, 해임,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인한 공석은 연간 기준이 아니라 발생 시점에 충원해야 하는 경우 정기적인 해당 직위 임명에 관해 내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충원해야 한다. 집행 이사 또는 9.6.5절에 따라 임명된 자 이외의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집행 이사 또는 집행 이사가 없다면 의장이 임명하여 그 공석을 임시적으로 충원하고 피임명인은 60일 동안 혹은 이사회의 다음 정기 회의 때까지(둘 중 더 빠른 날짜) 직위를 유지한다. 이후 이사회의 조치를 통해서만 그 직위를 충원할 수 있다.



9.6절 담당관 책임

9.6.1 이사회 의장

만약 있다면 이사회 의장("의장")은 이사 중 한 명으로서 이사회 회의를 주관하고, 때때로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내규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사회는 의장과 집행 이사를 지명하는 경우 결의를 통해 각 지위의 특정 책임을 설정해야 한다.

9.6.2 집행 이사

연구소의 집행 이사("집행 이사")는 의장이 없거나 부재 중인 경우 이사회 회의를 주관하고, 때때로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내규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집행 이사는 9.7절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져야 한다.



9.6.3 서기관

연구소의 서기관("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9.6.3.1 내규

서기관은 현재까지 개정된 내규의 원본이나 사본을 인증하고 연구소 본점에 보관하거나 보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9.6.3.2 회의록

서기관은 12.1절에 명시된 회의록을 보관하거나 보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9.6.3.3 고지

서기관은 내규에 따라 모든 이사회 회의를 고지하거나 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9.6.3.4 법인 기록

요청이 있는 경우, 서기관은 내규와 회의록을 합당한 시점에 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공개하거나 공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9.6.3.5 법인 직인 및 기타 책무

서기관은 연구소의 직인을 (만약 있다면)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보관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나 내규에서 규정하는 서기관직의 기타 권한과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9.6.4 재무 담당자

본 원의 재무 담당자(이하 "재무 담당자"라 한다)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9.6.4.1 회계 장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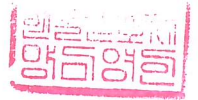
재무 담당자는 재무제표에 관례적으로 명시되는 자산, 부채, 수령, 지출, 이익, 손실, 유보 이익 및 기타 항목의 회계를 비롯하여 연구소의 재산과 거래 회계에 대한 적합하고 정확한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고 정비해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회계 장부는 이사가 합당한 시점에 언제라도 검사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9.6.4.2 재무 보고

재무 담당자는 요구되는 보고서에 명시할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인증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9.6.4.3 금전 및 귀중품의 예치와 지출

재무담당자는 모든 금전과 기타 귀중품을 이사회가 지정할 수 있는 보관소에 연구소의 명의로 계정으로 예치하거나 예치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사회가 명령할 수 있는 연구소 자금을 지출하거나 지출할 수 있게 하며; 재무 담당자로서 자신의 모든 업무와 연구소의 재무 상태에 대한 회계를 집행 이사와 그 외 이사에게 (요청이 있을 때면 항상)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나 내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재무 담당자 직의 기타 권한과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9.6.4.4 보증금

이사회가 요구가 있는 경우, 재무 담당자는 자신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망, 사퇴, 퇴직 또는 해임 시 관리하거나 보유 중인 모든 장부, 서류, 할인권, 금전 및 기타 재산을 연구소에 반환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지정하는 보증금을 연구소에 제공해야 한다.

9.6.5 추가 담당관

이사회는 연구소의 사무에 필요할 수 있는 기타 담당관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이나 집행 이사에 부여해도 된다. 그러한 각 담당관은 내규에 명시되어 있거나 이사회가 때때로 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그에 따라 정해진 임기 동안 직위를 유지한다.

9.7절 집행 이사

이사회는 연구소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 통제 하에서 연구소의 일상 활동, 사무, 업무를 감독하고, 지시하며, 관리할 집행 이사를 고용한다 (이사회는 이 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집행 이사는 고용 계약에 따른 직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임기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소의 모든 직원을 고용, 감독,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집행 이사는 이사회 통제 받으면서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이사회나 내규에서 정할 수 있는 기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또한 이사회는 집행 이사를 담당관으로 임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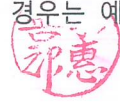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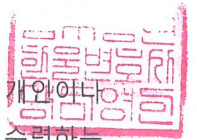
9.8절 담당관 보수

9.8.1 이사회가确定的한 봉급

(만약 있다면) 담당관의 봉급은 때때로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sup>개안이다</sup> 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담당관이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러한 봉급을 수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담당관으로 재직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사회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7.15절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담당관이 수령하는 모든 봉급은 연구소의 공공 이익 목적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제로 연구소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사를 겸직하는 유급 담당관은 담당관으로서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9.8.2 보수의 공정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시점에 직위와 상관없이 집행 이사회나 재무 담당자 대비 권한, 책무 또는 책임을 비교하여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포함)의 공정성을 검토한다 - (i) 그 자를 고용하는 시점, (ii) 그 자의 고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시점, (ii) 그 자의 보수를 변경하는 시점(단, 모든 임직원의 보수가 동일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예외).



10조 **이해의 충돌과 보수 승인 정책**

10.1절 이해 충돌 정책의 목적

이해 충돌 정책의 목적은 비과세 기업이 임원이나 이사 또는 내국인세법의 4958(f)(1)절에 정의되어 있고 IRS 규정의 53.4958-3절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의 사적인 이해에 유익할 수 있으며 내국인세법의 4958(c)(1)(A)절에 정의되어 있고 IRS 규정의 53.4958절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과도 이익 거래"의 가능성을 야기하는 거래나 약정을 하려고 고려하고 있을 때 이 기업의 이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비영리 연구소 및 자선 단체에 적용되는 이해 충돌을 관장하는 해당 주법이나 연방법을 보완하지만 대체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2절 정의

10.2.1 이해관계인

이사, 임원, 이사회가 권한을 위임한 위원회 위원 또는 내국인세법의 4958(f)(1)절에 정의되어 있고 IRS 규정의 53.4958-3절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로 아래 정의된 직간접적인 금전적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다.

10.2.2 금전적 이해

어떤 사람이 사업, 투자 또는 가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 (a) 연구소와 거래나 약정을 하는 기업체와 소유권 이해관계나 투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b) 연구소와 보수 약정 또는 연구소와 거래나 약정을 하는 기업체나 개인과 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
- (c) 연구소와 거래나 약정을 협상하고 있는 기업체나 개인에 잠재적 소유권 이해관계나 투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기업체나 개인과 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 금전적 이해가 있는 사람이다.

보수에는 직간접적 보수뿐 아니라 상당한 선물이나 편의가 포함된다.

금전적 이해는 반드시 이해 충돌일 필요는 없다. 10.3절 10.3.2항에 따라 금전적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사회나 위원회가 이해 충돌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

10.3절 이해 충돌 회피 절차

10.3.1 고지의무

실제적이거나 있을 수 있는 이해 충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제안된 거래나 약정을 고려하여 금전적 이해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이사회가 권한을 위임한 위원회 위원과 이사에게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10.3.2 이해 충돌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결정

금전적 이해와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이해관계인과 논의를 거친 후, 이 사람은 이해 충돌에 대한 판단을 논하고 이에 대해 투표를 하는 동안 이사회나 위원회 회의를 떠나 있어야 한다. 이사회나 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은 이해 충돌이 존재하는지 결정한다.

10.3.3 이해 충돌을 다루기 위한 절차

이해관계인은 이사회나 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발표를 한 후에는 이해 충돌 가능성이 수반된 거래나 약정에 대한 논의와 투표 중에는 회의를 떠나 있어야 한다.

이사회나 위원회의 의장은 해당되는 경우 제안된 거래나 약정의 대안을 조사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위원회를 지명한다.

상당한 주의를 한 후에 이사회나 위원회는 연구소가 타당한 노력을 하면 이해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 개인이나 기업체로부터 더 유리한 거래나 약정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해 관계를 낳지 않는 상황에서 더 유리한 거래나 약정이 상당히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나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의 다수결 투표에 따라 거래나 약정이 연구소만의 이익을 위한 연구소의 최대 이익에 맞는지 여부와 그 거래나 약정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10.3.4 이해 충돌 정책의 위반

이사회나 위원회 위원이 실제적이거나 있을 수 있는 이해 충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이사회나 위원회가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한 믿음의 근거를 위원들에게 알리고 고지하지 않은 위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주장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고지하지 않은 위원의 대답을 듣고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한 후, 이사회나 위원회는 위원이 실제적이거나 있을 수 있는 이해 충돌을 고지하지 않았는지 결정하여 적절한 징계 및 시정조치를 취한다.

10.4절 이사회와 위원회 절차의 기록

이사회 및 이사회가 권한을 위임한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 (a) 실제적이거나 있을 수 있는 이해 충돌과 관련하여 금전적 이해를 고지한 사람 또는 그 반대로 이러한 이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의 이름, 금전적 이해의 성격, 이해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 및 실제 이해 충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사회나 위원회의 결정.
- (b) 거래나 약정과 관련된 논의와 투표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 제안된 거래나 약정의 대안을 포함한 논의 내용 및 절차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투표의 기록.

10.5절 이사 겸직

당 연구소의 이사 한 명 이상이 이사로 있는 법인, 회사 또는 기관과 사이의 계약이나 기타 거래는 (i)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 및 이러한 이사의 다른 이사직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이사회나 위원회에 완전히 고지되었거나 알려져 있으며 이사회나 위원회가 공통 이사의 투표를 계산하지 않고도 충분히 투표에 따라 선의로 계약이나 거래를 인가, 승인 또는 비준한 경우(7조의 정족수 조항 적용) 또는 (ii) 계약이나 거래가 인가, 승인 또는 비준될 당시에 연구소에 적절하고 타당한 경우, 이러한 이사가 계약이나 거래를 인가, 승인 또는 비준하는 이사회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유효하고 무효로 할 수 없다.



10.6절 보수 승인 정책

연구소로부터 직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보수를 받는 이사회에 투표 위원은 위원의 보수에 관한 문제에 대한 투표에서 배제된다.

위원회의 관할권에 보수 문제가 포함되는 위원회의 투표 위원 및 연구소로부터 직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보수를 받는 이사회에 투표 위원은 위원의 보수에 관한 문제에 대한 투표에서 배제된다.

이사회나 위원회의 관할권에 보수 문제가 포함되는 이사회나 위원회의 투표 위원 및 연구소로부터 직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보수를 받는 이사회나 위원회의 투표 위원은 보수에 관한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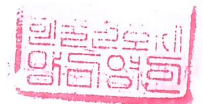
이사, 임원 및 직원, 계약자 및 기타 계약이나 약정을 위한 보수를 승인할 때, 이사회 또는 절차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에 보수위원회는 본 조의 이전 절과 다음 절 및 본 조 본 절의 이전 항에 나온 이해 충돌 요건과 정책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다음 추가 요건과 절차 또한 준수한다.

- (a) 보수 조건은 첫 번째 보수의 지불 전에 이사회나 보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b) 보수 약정을 승인하는 이사회나 보수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IRS 규정의 53.4958-6(c)(iii)절에 명시된 대로 상세히 보수 약정에 관하여 이해 충돌이 없어야 한다. IRS 규정의 해당 내용은 이 조직과 "결격 사유가 있는 자"(내국인세법의 4958(f)(1)절에 정의되어 있고 IRS 규정의 53.4958-3절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사이의 보수 약정을 승인하는 모든 이사회 위원과 위원회 위원은,
  - (1) 보수 약정의 대상이거나 이런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다.
  - (2) 보수 약정의 대상인 사람의 지시나 통제를 받는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
  - (3) 보수 약정의 대상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나 기타 보상을 받지 않는다.
  - (4) 보수 약정의 영향을 받는 중요한 금전적 이해가 있다. 

- (5) 보수 약정의 대상인 사람 및 이사회나 위원회 위원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를 승인했거나 승인할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를 승인하지 않는다.
- (c) 이사회나 보수위원회는 보수 조건을 승인하기 전에 비교에 관한 적절한 데이터를 얻고 이를 이용한다. 적절한 데이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 기능적으로 비교 가능한 위치에 대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조직(과세 조직과 비과세 조직 모두)에서 지불하는 보수 수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조직은 비슷한 크기와 목적이 비슷하고 유사한 자원을 가진 조직이다.
  - (2) 이 조직의 지리적 지역에서 유사한 서비스 이용 가능
  - (3) 독립적 기업에서 편집한 현재의 보수 조사
  - (4) 보수 약정의 대상인 사람의 직무와 경쟁하는 유사한 연구소에서 실제 서면 작성된 제안 금액.

이 조직이 과세년도 지난 3년치에 대한 평균 연간 총 수입액(출자금 포함)이 1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IRS 규정의 53.4958-6에서 허용된 대로, 이사회나 보수위원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커뮤니티에 있는 비슷한 조직에서 유사한 직무에 대해 지불하는 보수에 대한 데이터를 입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비교에 관한 적절한 데이터를 입수하여 이를 이용한다.

- (d) 보수 조건 및 이러한 조건 승인의 근거를 보수를 승인한 이사회나 보수위원회 회의의 서면 회의록에 기록한다. 이런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 보수 약정의 조건 및 승인 날짜
  - (2) 거래에 대한 토론에 참석했고, 거래에 대한 투표를 한 이사회나 보수위원회 위원, 각 이사회나 위원회 위원이 던진 표
  - (3) 입수하여 이용한 비교 데이터 및 데이터 입수 방법
  - (4) 이사회나 보수위원회가 본 조직의 특정 직위 또는 본 조직과의 보수 약정에 따른 직무 제공에 대한 타당한 보상이 입수한 비교 가능성 데이터의 범위보다 높거나 낮다고 결정한 경우, 이사회나 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의 근거를 회의의 회의록에 기록한다.
  - (5) 이사회나 위원회가 지리적 지역이나 기타 특정한 조건 때문에 비교 데이터를 조정한 경우, 이러한 조정 내용과 조정 사유를 이사회나 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의 근거를 회의의 회의록에 기록한다.
  - (6) 이사회나 위원회 위원이 보수 약정에 관하여 이해 충돌이 있는지 결정하는 것에 관하여 취한 조치와 이행 충돌이 있는 경우 취한 조치, 이해 충돌이 있는 위원이 거래의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승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취한 조치(예: 위원의 이해 충돌을 발견한 후, 이해 충돌이 있는 위원이 보수 약정 토론과 약정 승인 투표 이전에 회의를 떠나도록 요청을 받았고 그렇게 했음을 기록에 표기),

- (7) 다음 이사회나 위원회 회의일보다 더 늦기 전 또는 보수 약정의 승인에 관하여 이사회나 위원회가 최종 조치를 취한 60일 후에 보수 약정이 승인된 이사회나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준비해야 한다. 회의록은 이사회나 위원회가 약정에 대해 최종 조치를 한 다음에 그 이후 타당한 기간 내, 일반적으로는 다음 이사회나 위원회 회의 전이나 회의 시에 타당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이사회와 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7절 연차 보고서

모든 이사, 임원 및 이사회가 권한을 위임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확인하는 보고서에 매년 서명한다.

- (a) 이해 충돌 정책의 사본을 받은 사람
- (b) 정책을 읽고 이해한 사람
- (c) 정책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 사람
- (d) 연구소가 자선단체이며 연방세 비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비과세 목적을 한 가지 이상 달성하는 활동을 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10.8절 주기적 검토

연구소가 자선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비과세 자격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 검토를 수행한다. 주기적 검토에는 최소한 다음 주제가 포함된다.

- (a) 보수 약정 및 수당이 합법적인 조사 정보 및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협상을 토대로 타당한지 여부.
- (b) 연구소의 서면 작성된 정책을 준수하는 관리 조직과의 제휴, 합작 투자 및 약정이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타당한 투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금 및 더 나아가 자선 목적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유용, 허용 불가능한 사적 이익 또는 과도 이익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지 여부.

10.9절 외부 전문가 이용

10.8절에 규정된 대로 주기적 검토를 수행할 때, 외부 전문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외부 전문가를 이용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이용해도 주기적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이사회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11조 **이사, 임원, 직원 및 대리인의 보상**

11.1절 정의

11조의 목적을 위하여

11.1.1 “대리인”은

연구소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기타 대리인이거나 이었던 사람, 다른 외국 법인이나 국내 법인, 제휴사, 합작 투자사, 위탁 사업체 또는 기타 기업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또 대리인으로 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했었던 사람 또는 전임 법인의 요청에 따라 연구소나 또 다른 법인의 전임 기업이었던 외국 법인이나 국내 법인의 이사,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11.1.2 “소송 절차”는

민사, 형사, 행정 또는 수사 절차든 상관없이 있을 조짐이 있는, 계류 중 또는 완료된 소송이나 소송 절차를 의미한다.

11.1.3 “비용”에는

대리인으로서 지위나 관계로 인해 대리인에 대한 청구나 소송 절차의 변론에서 타당하게 발생한 금액의 제한이 없는 모든 변호사 수임료, 비용 및 기타 비용 및 본 11조에 따라 보상권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타당하게 발생한 모든 변호사 수임료, 비용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11.2절 보상 조항의 적용

11.2.1 대리인의 성공적 변론

11조에 언급된 본안 소송 절차의 변론이나 그 청구, 사안 또는 문제의 변론에 성공한 범위 내에서 대리인은 청구와 관련하여 대리인에 의해 실제적으로 타당하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는다.

11.2.2 대리인에 의한 조정 또는 성공적이지 못한 변론

대리인이 본 11조에 언급된 소송 절차 또는 그 안의 청구, 사안 또는 문제를 조정할 경우나 대리인에게 제기된 판결을 인정한 경우, 11.3절에서 11.6절까지의 조항에 따라 대리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결정한다.

11.3절 연구소 이외의 사람에 의해 제기된 소송

본 11.3절은 11.4절에 정의된 대로 “법인에 의해서나 법인을 대신하여” 제기된 소송 이외의 소송 절차에 적용된다. 연구소에 의해서나 연구소를 대신하여 제기되지 않은 이러한 소송 절차는 본 11.3절에서 “제3자 소송 절차”라고 한다.

11.3.1 제3자 소송 절차에서 보상 범위

11.3.2절에 따라 요구된 판결의 적용을 받아, 연구소는 제3자 소송 절차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였던 사람 또는 당사자가 될 거라는 조짐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제3자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실제로 타당하게 발생한 모든 비용, 판결, 벌금, 조정 및 기타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다.

11.3.2 제3자 소송 절차에서 보상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 규범

위의 11.3.1에서 대리인에게 부여된 보상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이사회는 11.5절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변제를 구하는 대리인이 선의나 연구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다고 타당하게 생각되는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및 형사 소송 절차의 경우에 대리인의 행동이 불법적이었다고 믿을 타당한 이유가 없었음이 분명한지 결정한다. 판결, 명령, 조정, 선고에 의한 소송 절차의 종결 및 불항쟁 답변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에 의한 종결 시에는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선의나 연구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다고 타당하게 생각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거나 그 사람의 행동이 불법적이라고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추정이 제기된다.

11.4절 연구소에 의한 또는 연구를 대신해 제기된 소송

본 11.4절은 (i) 연구소의 권리에 의해서나 권리로 제기된 소송 절차, (ii)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의 5233절의 의미 내에서 피고 임원이 자기 거래에 관여했거나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사, 임원 또는 법무장관에 의해 관계인 자격이 부여된 사람 또는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소송 절차, (iii) 자선 위탁 사업체가 보유한 자산과 관련하여 의무의 위반에 대해 법무장관이나 법무장관에 의해 관계인 자격이 부여된 사람에 의해 제기된 소송 절차에 적용된다(이러한 소송 절차는 내칙에서 "연구소에 의한 또는 연구를 대신한 소송 절차"라고 한다).

11.4.1 연구소에 의한 또는 연구를 대신한 소송 절차에서 보상 범위

11.4.2절에 따라 요구된 판결의 적용을 받고 11.4.3 및 11.4.4절에 규정된 대로 예외 적용을 받아, 연구소는 연구소에 의한 또는 연구를 대신한 소송 절차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였던 사람 또는 당사자가 될 거라는 조짐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대리인이거나 이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소송의 변론이나 조정과 관련하여 실제로 타당하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수도 있다.

11.4.2 연구소에 의한 또는 연구를 대신한 소송 절차에서 보상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 규범

11.4.1에서 대리인에게 부여되는 보상은 다음을 조건으로 한다. 이사회는 11.5절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변제를 구하는 대리인이 타당한 조사를 포함하여 같은 위치에 있는 평범하고 신중한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가질 신중함을 가지고 선의나 연구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행동했는지 결정한다.

11.4.3 법정 밖에서 조정된 청구

대리인이 법원의 승인이 있거나 없이 연구소에 의하여 또는 연구를 대신하여 제기될 조짐이 있는 소송이나 계류 중 소송을 조정하거나 달리 처리한 경우, 대리인은 조정이나 기타 처리 조건에 따라 지불된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법원의 승인 없이

조정하거나 달리 처리한 소송에서 소송 절차가 법무장관의 승인으로 조정된 경우 외에는 대리인은 소송 절차의 변론에서 타당하게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 11.4.4 대리인에 대해 재정된 청구 및 소송

대리인이 연구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소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경우, 대리인은 판결에 따라 지불된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며 그 소송의 변론과 관련하여 실제로 타당하게 발생한 비용은 11.4.1절에 따라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이런 대리인에게 보상이 부여된다.

- (a) 11.4.2절에서 요구된 선의의 행동에 대한 판단은 11.5절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b) 소송의 신청 시에,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소송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대리인이 발생한 비용에 대해 공정하고 타당하게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대리인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은 배상될 비용의 적절한 금액을 결정한다.

#### 11.5절 대리인의 선의의 행동에 대한 판단

11.3절과 11.4절에서 대리인에게 부여된 보상은 다음에 의해 이러한 절에서 요구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a) 소송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정족수의 다수결
- (b) 소송 절차가 계류 중이거나 계류 중이었던 법원. 연구소나 대리인 또는 변호사나 대리인을 변론하는 다른 사람이 소송을 신청하면 대리인, 변호사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청을 연구소가 반대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런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 11.6절 제한

본 11조에 따라 11.2.1절이나 11.5(b)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상이나 선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a) 보상이나 선급이 수정된 법인 정관 또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 밖의 금액이 지불된 소송 절차에서 제기된 소송의 원인이라고 주장되는 사항이 발생 시점에 발효 중인 계약의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b) 보상이 법원에서 조정을 승인하는 데 명문으로 부과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11.7절 비용의 선급

본 11조에서 승인된 것처럼 대리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경우 외에는 선급 금액을 상환한다는 약정서를 대리인에 의해 또는 대리인을 대신하여 받는 즉시 소송 절차의 최종 처분 전에 소송 절차의 변론에서 발생한 비용을 연구소에서 선급 받을 수 있다.

11.8절 비이사 및 비임원의 계약상 권리

본 11조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도 연구소나 그 자회사의 이사와 임원이 아닌 사람이 계약이나 그 외의 방법으로 부여 받은 보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9절 보험

연구소가 본 11조의 조항에 따라 대리인의 법적 책임을 면제시킬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사회는 1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러한 자격에서 대리인에게 제기되었거나 대리인에 의해 발생한 법적 책임이나 대리인의 지위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해 대리인을 대신하여 보험의 구매와 유지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12조 법인 기록, 보고서 및 직인

12.1절 의사록

연구소는 이사회나 위원회의 모든 행위의 기록이 포함된 서면 형태의 회의록을 보관하며, 이 회의록에는 (i) 각 회의 시간, 날짜 및 장소, (ii) 회의가 정기 회의인지 아니면 임시 회의인지 여부, 임시 회의인 경우 소집된 이유, (iii) 각 회의 통지 방식 및 그 사본, (iv) 이사회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이름, (v) 모든 회의의 회의록, (vi) 통지의 서면 포기서, 회의 보류 동의서 또는 회의록 승인, (vii) 회의를 하지 않은 조치에 대한 모든 서면 동의서, (viii) 통지 부족에 대한 모든 항의 및 (ix) 이사회 조치와의 공식적 의견 차이 등이 포함되어 있다.

12.2절 회계 장부 및 회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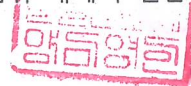
연구소는 적절하고 정확한 회계 장부 및 회계 기록을 보관한다. "정확한 장부와 기록"에는 재산 및 거래 계정, 자산, 부채, 수입금, 지불금, 손익이 포함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2.3절 법인 정관 및 부칙

연구소는 현재까지 개정된 법인 정관 및 부칙 원본이나 사본을 주사무소에 보관한다.

12.4절 연방세 면제 신청서 및 연간 정보 보고서의 유지와 검사

연구소는 연방세 면제 신청서의 사본 및 연간 정보 보고서 사본을 제출일로부터 3년 동안 주사무소에 항상 보관한다. 이러한 문서는 법규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 열람이나 복사를 위해 공개된다.



12.5절 연간 보고서, 거래내역서

위원회는 연구소의 회계연도 마감 후 120일 내에 다음 정보가 포함된 연간 보고서를 각 이사에게 보낸다.

- (a) 회계연도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소의 자산과 부채
- (b) 회계연도 중 신탁 기금을 포함하여 자산과 부채의 주요 변동사항
- (c) 당 회계연도 동안 연구소의 수익이나 수입금(측정 목적에 제한 및 비제한 모두 포함)



- (d) 당 회계연도 동안 일반 목적과 제한된 목적에 대한 연구소의 비용이나 지불금
- (e) (i) 연구소, 그 모회사나 자회사가 당사자인 거래, (ii) 5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수반된 거래나 동일한 사람과의 여러 거래 중 하나가 합계 5만 달러 이상이 수반된 거래의 거래내역서 (iii) 다음 이해관계인 중 하나가 직간접적 금전적 이해가 있었던 거래(단순히 공동 이사직을 가진 경우는 금전적 이해가 아님)
  - (1) 연구소, 그 모기업 또는 그 자회사의 이사나 임원
  - (2) 연구소, 그 모기업 또는 그 자회사의 투표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자.

내역서에는 (i) 거래의 간략한 설명 (ii) 관여된 이해관계인의 이름 (iii) 이해관계인과 연구소의 관계 (iv) 거래에서 금전적 이해의 성격 (v) 실행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람이 동업자인 동업 관계인 경우에 동업 관계의 이해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 그 이해의 총액.
- (f) 10조나 11조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임원이나 이사에게 지불된 합산하여 1만 달러 이상인 대출, 보증금, 보상금 또는 선금금의 총액과 세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

12.6절 이사의 검사권

모든 이사는 연구소 및 각 자회사의 장부, 기록, 모든 종류의 문서 및 물적 재산을 타당한 시간에 검사할 절대적 권리가 있다. 이사가 직접 검사를 하거나 이사의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권에는 문서를 복사하고 발췌본을 만들 권리가 포함된다.

12.7절 법인 직인

법인 직인이 있는 경우, 이는 이사회에서 수시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여야 한다. 하지만, 법인 법률 문서에 인장을 찍지 못해도 이런 법률 문서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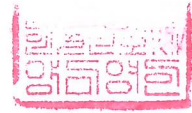
12.8절 기부금의 연간 보고서 및 웹사이트 공개

회계연도 중 기금을 바탕으로 모금된 기부금 및 관련 활동의 연간 보고서를 SKCI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13조 법률 문서, 예금 및 기금의 집행

13.1절 법률 문서의 집행

이사회는 본 정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결의안을 통해 연구소의 임원이나 대리인에게 연구소의 이름으로 또는 연구소를 대신하여 계약을 맺거나 법률 문서를 집행하고 전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권한은 보편적이거나 특정한 경우에 국한될 수 있다. 그렇게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경우,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은 계약이나 약정으로 연구소를 구속하거나, 담보를 잡히거나, 어떤 금액으로도 연구소에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을 권한이 없다.



13.2절 수표 및 어음

이사회는 결의안으로 별도로 특별히 결정된 경우나 법률로 그 밖에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면, 수표, 어음, 약속어음, 지불 명령서 및 기타 연구소의 채무 증거는 회계담당자의 서명을 받고 전무 이사가 부서한다.

13.3절 예금

연구소의 모든 기금은 이사회가 선택하는 은행, 신탁 은행 또는 다른 보관소에 연구소의 예금에 수시로 예치된다.

13.4절 선물

이사회는 연구소를 대신하여 연구소의 자선 목적이나 공공 목적을 위해 기부금, 선물, 유산 또는 유증을 받는다.

14조 해석 및 정의

문맥상 달리 볼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법의 총칙, 해석 규칙 및 정의가 본 부칙의 해석을 관장한다. 위의 내용이 다른 일반적인 경우를 제한하지 않으며, 남성에는 여성과 중성이 포함되며, 단수에는 복수가 포함되고, 복수에는 단수가 포함되고, "인"에는 연구소와 자연인이 모두 포함된다. 법령, 규정 및 법률의 모든 참조에는 참조하는 법령, 규정 및 법률을 대체하는 향후의 법령, 규정 및 법률이 포함된다.

15조 개정

15.1절 이사에 의한 개정

이사회는 정관을 채택,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은 다음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 (a) 이러한 정관 조항에서 법률로 달리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사의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더 많은 수의 투표를 제외하고는 이런 조항을 변경,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않을 수 있다.
- (b) 개정안은 선출된 이사의 임기 이상으로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 (c) 정관이 이사회 회의에서 채택,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통지가 이러한 부칙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제안된 정관 개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개정안을 제시하는 회의소집 서면통지를 정관에 따라 적절한 때에 **요청하여 열린** 회의에서만 인가된다.

## 개정 정관 채택 확인서

본 정관은 2016년 12월 8일자로 채택되었다. 본 정관은 2018년 12월 26자에 채택된 첫 번째 개정안의 조항을 개정 정관에 포함시키기 위해 2018년 12월 26일 기준으로 다시 인쇄되었다.

여기 서명인은 본인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한국문화 연구소 (Sustainable Korean Culture Institute, Inc)의 서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개정 정관이 2018년 12월 26일자 결의안에 의해 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고 채택되었음을 확인한다.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 캠퍼스 C.V. Starr 동아시아도서관 미술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특별 회의에서 작성함.

날짜: 2018년 12월 26일

  
알버트 정, 서기관

